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개정(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 조정
- 나.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된 위반횟수 계산기간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대통령령 제 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제2호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의 1차 위반란 “12만5천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의 2차 위반란 “25만원”을 “375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의 3차 이상 위반란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 라. (생략)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법 제29조제1항</td><td>12.5만원</td><td>25만원</td><td>50만원</td></tr></table>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	12.5만원	25만원	50만원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법 제29조제1항</td><td>250만원</td><td>375만원</td><td>500만원</td></tr></table>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	12.5만원	25만원	50만원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u>따른다.</u> <u>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32